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특허법인 동천

대한민국 0617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4길 16, 5층
(대치동, 세풍빌딩)

발송일 (일/월/년) 2018년 12월 20일 (20.12.2018)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PP18-126-PCT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18/010490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8년 09월 07일 (07.09.2018)

우선일 (일/월/년)
2017년 09월 10일 (10.09.2017)

국제특허분류(IPC)
A45F 5/00(2006.01)i, A45B 11/02(2006.01)i

출원인
원철호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

본 견해서의 완료일
2018년 12월 19일 (19.12.2018)

심사관
김연경
전화번호 +82-42-481-3325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a)).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신규성 (N)	청구항	1-7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진보성 (IS)	청구항	1-7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청구항	1-7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 D1: JP 3207786 U (TAKESHI UTSUMI) 2016.12.01
- D2: KR 10-2006-0082719 A (학교법인 인제학원) 2006.07.19
- D3: KR 10-1338754 B1 (문은미 등) 2013.12.06
- D4: JP 3033219 U (SHIGUO ENTERPRISE CO., LTD.) 1997.01.21
- D5: KR 20-0480530 Y1 (이준범) 2016.06.03

1. 신규성 및 진보성

1.1 청구항 제1항 내지 제7항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은 세로부의 상부에 제2결속부재를 사용하여 가로방향으로 결합되는 가로부에 다수 개 용품의 결합 및 거치가 가능하고, 다수 개의 고정부재를 사용하면 결합 및 거치된 다수 개 용품의 고정이 가능하게 되며, 보조지지체가 결합되면 지지력 증대도 가능하게 되는 용품지지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인용문헌 D1 내지 D5에 기재된 발명과 차이가 있으며, 상기 차이는 상기 인용문헌들을 고려해 보아도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습니다(PCT 제33조(2) 및 (3)).

청구항 제2항 내지 제7항은 청구항 제1항의 종속항이므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습니다(PCT 제33조(2) 및 (3)).

2. 산업상 이용가능성

청구항 제1항 내지 제7항에 기재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합니다(PCT 제33조(4)).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청구범위, 발명의설명 및 도면의 명료성에 관하여 또는 청구범위가 발명의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청구항 제5항은 청구항 제1항의 ‘세로부(30) 내부체(33)’를 인용하고 있으나, 상기 ‘세로부(30) 내부체(33)’는 앞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불명확하므로, 청구항 제5항은 PCT 조약 제6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